

『平難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A Study on Pyeong-Nan Wonjong Gongsin-Noggwon

송 일 기 (Song, Il-Gie)*

진 나 영 (Jin, Na-Young)**

◁ 목 차 ▷

- | | |
|------------------------------|--------------|
| 1. 緒 論 | 3.2 形態 分析 |
| 2. 『平難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 3.3 體制 分析 |
| 2.1 頒賜事由 | 4. 錄券의 內容 分析 |
| 2.2 受給者 | 4.1 等級別 分析 |
| 3. 現存本の 書誌的 分析 | 4.2 身分別 分析 |
| 3.1 現存本 現況 | 5. 結 論 |
| | <참고문헌> |

< 초 록 >

『평난원종공신녹권(平難原從功臣錄券)』은 선조가 1591년 역모를 꾀했던 정여립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평난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반사(頒賜)한 책이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제주갑인자(再鑄甲寅字)로 인출된 『평난원종공신녹권』 2책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사유 및 경위를 알아본다. 녹권의 형태와 그 체제를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을 각 등급별로 나누어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그들의 신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난원종공신녹권』은 제주갑인자의 금속활자본으로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80종의 직함에 모두 685명(1등 129명, 2등 144명, 3등 412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기술되었으며 1등원종공신 직함의 품계가 2등과 3등에 비해 높았으며 문관이 무관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원종공신들을 4종의 신분(身分)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양반 456명, 중인 122명, 양인 81명, 천인 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반이 원종공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要語: 『平難原從功臣錄券』, 『原從功臣錄券』, 평난공신, 평난원종공신, 제주갑인자, 경진자, 정여립의 난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jny415@naver.com) (교신저자)

접수일: 2011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9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Pyeong-Nan Wonjong Gongsin-Noggwon(『平難原從功臣錄券』) is a book which recorded the titles of positions and the names of retainers who suppressed the Jeong Yeo-rip's revol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sons or and procedures of granting *Noggwon* by examining the existing two books of *Pyeong-Nan Wonjong Gongsin-Noggwon* printed with Jaeju-Gabinja(再鑄甲寅) metal movable types. *Pyeong-Nan Wonjong Gongsin-Noggwon* was composed of the beginning(卷首), the body(本文), and the end(卷末). *Gwang-Kuk Wonjong* meritorious retainers formed the total of 685 persons(1st grade: 129 persons, 2nd grade: 144 persons, 3rd grade: 412 persons) with 180 official titles. Also an analysis of their social status confirmed that of 685 persons, “Yangban(兩班)” constituted the largest group(456 persons: 66.6%), “Jung-in(中人)” were the second largest group (122 persons: 17.8%), “Yang-in(良人)” were 81 persons(11.8%), and “Cheon-in(賤人)” were only 26 persons(3.8%).

Key words: *Pyeong-Nan Wonjong Gongsin-Noggwon*,
Wonjong Gongsin-Noggwon, *Pyeong-Nan Gongsin*,
Pyeong-Nan Gongsin, Jaeju-Gabin letter type,
Gyeongjin letter type, the Jung Yeo-rip's revolt

1. 緒 論

공신(功臣)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공신제도는 그 기원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중국의 것을 모방하여 신라시대 때 공신을 책봉(冊封)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에 들면서 공신 책봉과 함께 녹권(錄券)의 반사(頒賜)가 행해지면서 제도화 된 것을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태조(太祖) 때 개국공신(開國功臣) 책봉을 시작으로 영조(英祖)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까지 모두 28차례 공신(功臣)의 책봉이 있었다. 조선의 공신제도는 정공신(正功臣)과 정공신보다는 공이 작은 사람들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각각 책봉하고, 국가의 대소사(大小事)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공신증명서로서 왕의 하명에 따라 공신녹권(功臣錄券)을 반사하였다. 특히 책봉된 원종공신의 수는 정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나, 현존하는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그 수가 많지 않아 그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원종공신에 대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타 문헌에도 그 기록된 바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원종공신에게 반사된 『원종공신녹권』은 책 자체의 연구를 통해 원종공신의 책봉과 관련된 당시의 정치적 역학 관계를 살필 수 있으며, 당시의 역사적 사실은 물론 조선시대에 간행된 녹권은 반사시기가 분명하여 서지적인 특징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대상 자료인 『평난원종공신녹권(平難原從功臣錄券)』은 역모(逆謀)를 꾀하던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선조 24년(1591)에 반사된 것으로, 조선시대에 발급되어 현존하는 21종의 원종공신녹권 중 재주갑인자(再鑄甲寅字)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이다. 또한 이 녹권은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을 세운 공신에게 발급한 『광국(光國)원종공신녹권』과 같은 해에 반사되었으므로 그 체제와 내용을 비교할만하다. 종래 평난공신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및 서지학 분야에서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소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들은 조선전기에 작성된 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그 동안 이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¹⁾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먼저 평난원종공

신이 책봉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수급자의 가계와 녹권 편찬의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서지적 검토를 하겠다. 또한 녹권에 등재된 인물의 내용 분석을 통해 그 당시 서적 인쇄 문화와 함께 전통적 관료사회에서 관직제도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녹훈자의 보상제도가 어떠했는지 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평난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녹권이 반사된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함께 그 반사사유를 알아보고, 현존하는 녹권의 형태적 특징과 그 편성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녹권에 기재된 원종공신들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들의 직함(職銜)과 신분(身分)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종공신의 논공행상을 포함한 그 당시 포상제도의 현상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平難原從功臣錄券」의 頒賜事由 및 受給者

2.1 頒賜事由

평난공신(平難功臣)은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여립의 모반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 기축옥사(己丑獄事)이다. 이것은 같은 해 10월에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재령군수(載寧郡守) 박충간(朴忠侃), 안악군수(安岳郡守) 이축(李軸), 신천군수(信川郡守) 한응인(韓應寅) 등이 상고(上告)하여 정여립 등이 모반하였다고 고변함으로써 발단되었다. 관련자들이 체포·처형되고 토벌이 시작되었으며, 정여립은 아들 정옥남(鄭玉男) 등과 진안(鎭安) 죽도(竹島)로 도망하였다가 관군(官軍)의 포위 속에서 정여립은 자살하고 정옥남은 잡혔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동인(東人)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서인(西人)인 정철(鄭澈)

1) 송일기, 진나영,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권 4호(2008). ; 송일기, 진나영,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권 4호(2009). ; 송일기, 진나영, “『光國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권 4호(2010).

이 옥사를 엄하게 다스려, 그 이듬해까지 걸쳐 이발(李潑), 이호(李浩), 백유양(白惟讓), 유몽정(柳夢井), 최영경(崔永慶) 등이 처형당하였다. 또한 정언신(鄭彦信), 정언지(鄭彦智), 정개청(鄭介淸) 등이 유배되고 노수신(盧守愼)은 파직되었다. 이로부터 동인의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되어 호남(湖南) 출신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높은 관직에 오른 일이 없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鄉)이라 부르게 되었다.

선조는 정여립의 역모조사를 마무리를 하며 이와 관련 일에 대해 공을 세운 박충간 등을 공신에 책봉하라고 전교하였다. 그 다음 해에 난을 평정한 공신이라는 의미로 평난공신과 평난원종공신을 책봉하였다. 이 과정은 「선조실록」 기사와 「평난원종공신녹권」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선조는 정여립의 역모가 평정된 후인 1590년 1월 1일에 공을 세운 박충간 등을 공신으로 삼으라고 명한 것을 시작으로 2월 1일에는 평난공신의 녹훈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8월 1일에는 광국공신과 함께 평난공신에게 녹권을 반사하고 고유제(告由祭)와 회맹(會盟)을 의례대로 한 뒤 물품을 등급별로 하사하고 나라에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²⁾ 평난 정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平難 正功臣

區分	人員數	姓名
1등	3인	朴忠侃, 李軸, 韓應寅
2등	12인	閔仁伯, 韓準, 李綏, 趙球, 南截, 金貴榮, 柳堧, 俞泓, 鄭徹, 李山海, 洪聖民, 李準
3등	7인	李憲國, 崔湜, 金命元, 李增, 李恒福, 姜紳, 李廷立
合計	22인	

이들이 공신으로 책봉된 이유는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박충간 이하는 고변(告變)을 했고, 민인백 이하는 역도의 괴수를 잡았으며 김귀영 이하는 추관(推官)으로서 죄인의 복초를 가장 많이 받아냈기 때문이다.

2) 「宣祖修正實錄」 卷24. 23年(1590) 8月 1日 庚午條.

이듬해인 1591년(선조 24) 3월 21일, 정여립의 역모를 평정하는 데 힘쓴 정공신을 도와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으며, 그들의 처우에 대해 명하였다. 이렇게 책봉된 원종공신은 모두 685명에 달하였다. 1등원종공신은 129명, 2등원종공신은 144명, 3등원종공신은 412명이었다. 1등원종공신은 대체적으로 종친(宗親)이나 신분 혹은 품계가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2등 및 3등원종공신은 1등보다는 낮은 신분이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신분이 낮은 노비들도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인의 기세가 한 때 꺾이게 되어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다.

2.2 受給者

연구 대상본인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원종공신녹권』의 앞부분에는 녹권을 받은 대상인 수급자(受給者)의 직함과 성명을 했는데, 이는 녹권 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평난원종공신녹권』의 수급자는 3등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유봉서(劉鳳瑞)’이다.

수급자 유봉서는 본관이 강릉(江陵)으로, 처음 이름[初諱]은 천만(天萬)이며 생졸년은 알려져 있지 않고 3월 7일에 세상을 떠났다. 평난원종공신으로 책봉된 1591년에는 정3품 당하야문(堂下衙門) 중에서 시(寺)·원(院)·감(監) 등이 붙은 관서에 소속된 종4품의 첨정(僉正) 관직에 임하고 있었다. 배우자는 청송(靑松) 심(沈)씨이며 유봉서의 묘는 조상의 선산에 함께 묻혀 있다. 수급자에 대한 전기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보학 자료를 통해 그와 관련된 인물을 알아봄으로써 유봉서의 집안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통행본인 『강릉유씨대동보(江陵劉氏大同譜)』의 보학 자료를 토대로 그의 가계를 작성해 보면 <그림 1>의 가계도와 같다.



<그림 1> 수급자 유봉서의 가계도

수급자 유봉서의 아버지는 철명(哲明)이며, 그의 조부는 세석(世碩)으로 호(號)는 송강(松崗)이다. 1457년(世祖 3) 3월 5일에 출생하여 1540년(中宗 35)에 졸하였으며, 통훈대부(通訓大夫)로 개령현감(開寧縣監, 종6품) 남해군수(南海郡守)를 지냈다. 유봉서의 고조부는 용하(用何)로, 1431년(世宗 13) 8월에 태어나 1484년(成宗 15) 2월에 졸하였다. 그는 1450년(세종 32)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1451년에 문과(文科) 급제하여 통훈대부로 예조좌랑(禮曹佐郎, 정6품)을 지냈다. 유봉서의 가계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을 살펴보니 고조부와 조부가 조선 시대 문신 정3품 하계(下階)인 통훈대부를 지낸 사실로 보아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문관으로 관직에 나아가 활동하였다.³⁾ 이러한 가계 형성 사실을 살펴본 『강릉유씨대동보(江陵劉氏大同譜)』의 보합 자료에는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유봉서가 ‘평난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 연구에서는 『강릉유씨대동보』에 누락된 유봉서의 전기사실을 일부 보완할 수 있었다.

이외에 현존하는 『평난원종공신록권』의 수급자는 평난원종공신 1등에 책봉된 전도사(前 都事) 신경희(申景禧)가 있다.

3) 江陵劉氏大同譜編纂委員會, 『江陵劉氏大同譜』 (서울: 江陵劉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4), 28-43.

3. 現存本の 書誌的 分析

이 장에서는 『평난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녹권의 체제를 분석한다. 형태 분석에서는 현존하는 『평난원종공신녹권』을 통해 녹권의 형태적인 특징을 파악해보고, 체제 분석에서는 녹권을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 특징을 알아 보도록 한다.

3.1 現存本 現況

현존본의 전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도서관의 고서목록을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평난원종공신녹권』은 2종인 것으로 소재가 파악되었으며,⁴⁾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平難原從功臣錄券』의 傳存現況

순위	소장처	청구기호
1	국립중앙도서관	B2古朝31-10
2	개인 소장	신응현(충북) 덕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난원종공신녹권』은 2곳을 제외하면 현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난원종공신에 대한 내용이 『실록』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상기의 녹권자료를 통해 평난원종공신의 반사사유를 비롯하여 등급별 직함 및 성명, 포상규정 그리고 평난공신도감에 대한 사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신분 및 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들

4) 박문열은 “平陵君 申景禧 『平難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에서 수급자가 신경희인 것으로 밝혔는데, 그 대상본은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후손 신응현 가에 소장 전래되고 있는 녹권이다(박문열, “平陵君 申景禧 『平難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청주대 인문과학논집』 제31집(2005), 183-209).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녹권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깨끗하고 양호한 편이며, 녹권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3.2 形態 分析

연구 대상 자료인 「평난원종공신녹권」은 「광국원종공신녹권」과 함께 선조 24년(1591)에 금속활자 중 재주갑인자인 경진자(庚辰字)로 인출한 1책이다.⁵⁾ 경진자는 선조 13년(1580)에 갑인자를 두 번째 주조한 동활자로, 대내에 소장한 갑인자본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선조 13년 정월부터 9개월에 걸쳐 주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이 녹권은 선장(線裝) 형태로 능화문양이 들어 있는 비단으로 장책이 되었으며, 표제(表題)는 ‘어휘평난원종녹권(御諱平難原從錄券)’으로 제첨(題簽)되어 있다. 권수제(卷首題)는 ‘평난원종공신녹권(平難原從功臣錄券)’이라 되어 있다. 이 연구 대상본인 국립본 「평난원종공신녹권」의 형태적 서지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국립도서관본 「平難原從功臣錄券」의 形態書誌

平難原從功臣錄券 / 平難功臣都監 編. - 再鑄甲寅字本. - 漢城: 平難功臣都監, 宣祖 24(1591)年.

1冊(15張): 四周雙邊, 半廓 25.2 × 16.8cm, 9行17字, 內向3葉花紋魚尾: 34.1 × 22.1cm.

表題名: 御諱平難原從錄券

板心題: 平難原從功臣錄券

印記: 施命之寶

5) 그런데 선행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녹권이 공신도감자(功臣都監字)로 인출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신도감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공훈을 세운 공신에게 녹훈을 내리고 녹권을 반사하기 위해 공신도감에서 인출할 때 사용했던 목활자이므로 전혀 성격이 다른 금속활자(재주갑인자)로 인출한 녹권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1), 55).

6)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54-58.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廓)의 크기는 25.2×16.8cm이며, 전체 책의 크기는 34.1×22.1cm이다.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9행 17자씩 배자되어 있고, 계선(界線)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중앙의 판심부(版心部)에는 ‘평난원종공신녹권(平難原從功臣錄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어미(魚尾)는 상하내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변란과 계선, 그리고 계선과 어미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며 이를 통해 활자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인장(印章)은 『광국원종공신녹권』에 서와 같이 ‘시명지보(施命之寶)’⁷⁾가 녹권의 수급자(受給者)가 기재된 권수제면(卷首題面), 특전 및 포상규정을 명한 면, 평난공신도감의 구성원들을 표기한 면 등 모두 세 곳에 주인(朱印)되어 있다.

3.3 體制 分析

재주갑인자본 『평난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크게 권수(卷首)·본문(本文)·권말(卷末)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구성체제와 그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권수의 체제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으로 구성되었다. 본문의 체제는 공신 책봉과 관련된 봉교일(奉敎日)과 봉명자(奉命者), 녹권의 반사사유 및 경위,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시행과 관련된 봉교일과 봉명자,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권말의 체제는 녹권의 발급기관명, 발급기관 구성원의 직함과 성명(姓名)으로 구성되었다.

7)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조선의 국왕문서용 어보(御寶) 중 하나로, ‘시명(施命)’은 『주역(周易)』의 구괘(姤卦)에서 따온 말로, 바람이 하늘 아래에 두루 다니는 것과 같이 군주가 상(象)을 두루 관찰하여 명령을 베풀어서 사방(四方)을 교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周易』, 下經44, 姤. “象曰 天下有風姤 后以 施命誥四方.”).

<표 4> 「平難原從功臣錄券」의 體制 構成

區分	內容		印章
卷首	卷首題	錄券名	受給者 姓名 위에 御寶 (施命之寶)
	受給者	職銜 姓名	
本文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공신책봉) 職銜 姓名	三等功臣 마지막에 御寶 (施命之寶)
	傳旨	傳旨 … (책봉사유)	
	等級別功臣	職銜 姓名	
	奉敎日 및 奉命者	날짜(포상 및 특전 시행) 職銜 姓名	
	傳旨	傳旨 … (등급별 포상규정)	
卷末	功臣都監名 및 都監員	發給機關名 각 도감원의 職銜 및 姓名	都監員의 시작부분에 御寶 (施命之寶)

3.3.1 卷首

『평난원종공신녹권』의 권수는 권수제, 녹권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에 대한 내용으로 그 체제를 구성하였다. 권수제는 녹권명인 ‘평난원종공신녹권’이 기재되었고, 그 다음 행에는 수급자의 정보를 보여주는데 그의 직함과 성명만을 나타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좌리원종공신녹권』은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나 수급자의 직함, 성명에 대한 사항은 일일이 필사되어 있었으나, 『평난원종공신녹권』은 위의 부분을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되었다.

3.3.2 本文

본문의 구성은 공신 책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인 봉명자의 직함과 성명,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의 내용을 담은 전지(傳旨),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및 특전 시행에 관한 명을 받은 사람의 직함과 성명,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平難原從功臣錄券」의 本文 內容

順序	內容	奉命者
1	萬曆 19年(1591) 3月 21日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명함	同副承旨 奇峇
2	傳旨(공신 책봉 경위 및 사유)	-
3	각 등급별 공신의 직함과 성명 나열	-
4	萬曆 19年(1591) 3月 21日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규정 및 특전을 명함-吏曹 담당	同副承旨 奇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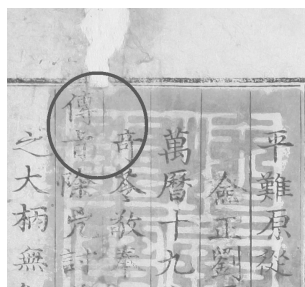
선조 24년(1591) 3월 21일, 왕이 이조에 공신을 책봉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광국원종공신녹권」과 같은 동부승지(同副承旨) 기영(奇峇)⁸⁾이다. 다음 행에는 ‘전지(傳旨)’를 표기한 후, 공신을 책봉하는 사유 및 경위에 대한 내용을 나타냈는데, ‘전지’는 다른 행의 글자보다 한 글자 위에 기재하였다. 이는 왕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전지 부분은 <그림 2>와 같다.

선조가 1591년에 「평난원종공신녹권」에 관해 내린 전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흉적(凶賊)을 제거하고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지극한 충심이며, 그 공적을 기리고 노고(勞苦)에 보답하는 것은 제왕의 크나큰 권력이다.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기록함에 있어 어찌 귀천(貴賤)이 있고 특수함이

8) 생몰년은 1432-1481년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가구(可久)이며 증좌찬성 화년(和年)의 아들이다. 문종 1년(1451) 생원시에 합격하고, 세조 1년(1455) 12월 좌익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6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고, 예종 즉위년(1468) 10월 동부승지에 발탁되어 곧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가선대부에 올라 계림군(鷄林君)에 봉하여졌다. 그 후 우부승지·좌부승지·도승지를 거쳐 성종 2년(1471) 3월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록되고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랐다. 1472년 경상도관찰사를 겸하였고, 1474년 공조판서에 승진,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고, 1476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477년 지중추부사가 되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11.10.25] <<http://people.aks.ac.kr/index.aks>>).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건대 보잘 것 없는 짐이 외람되어 홍업(鴻業)을 수호(守護)함에 있어 모름지기 정려(精勵)한 치국(治國)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상 전진 궁극하며 스스로 지중(持重)하였으나 큰 간난(艱難)을 당함에 있어 어찌 사기(事機)의 어려움을 추찰(推察)하여 효경(梟獍)의 악당을 제압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진신(摺紳)들의 도움으로 벗어나고 다행히 종사(宗社)의 영령(英靈)들의 힘을 빌려 이미 주토(誅討)의 의리를 바로 잡았던 것이다. 이에 이징(彝鼎)⁹⁾에 새겨서 충근(忠勤)을 기리도록 해야 할 것이니, 생각건대 그대 신료(臣僚)들은 내외 없이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천(庶賤)에 이르기까지 혹은 기구(機構)를 설치하여 일일이 찾아내고 혹은 장의(仗義)를 통하여 뿌리채 찾아내어 무릇 협찬(協贊)한 공력(功力)이 있으면 모두 원종의 공[原從之功]으로 녹첩(錄牒)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하시니 이에 구장(舊章)을 계탁(稽度)하여 그 공적이 신전(新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바이다.¹⁰⁾



<그림 2> 「平難原從功臣錄券」의 傳旨 부분

위의 전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난원종공신은 역적인 정여립이 벌인 난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지 다음 행부터는 등급별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하였다. 1등은 129명, 2등은 144명, 3등은 412명의 원종공신 685명이 차례로 그들의 직함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등급별 공신의 구분 표시는

- 9) 종묘(宗廟)에서 신주(神酒)를 따라 두는 종정(鐘鼎)을 지칭하는 것으로 옛날 공로가 있는 신하의 이름을 제기(祭器)에 새겨서 오래도록 전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 10) 平難功臣都監 編, 「平難原從功臣錄券」 <卷首>.
 “傳旨之大柄無細大而畢錄豈貴賤而有殊顧予眇躬叨守鴻業雖勵精圖治恒戰兢而自持而遺大投艱奈事機之難察何圖梟獍之惡迺出摺紳之間幸賴宗社之靈已正誅討之義茲銘彝鼎以褒忠勤惟爾臣僚罔有內外上自士大夫下至庶賤或設機而釣探或仗義而根捕凡有協贊之力悉錄原從之功爰稽舊章庸示新典.”

‘…等乙良平難原從功臣○等’이라고 나타내어 등급간 구별을 쉽게 하였다. 이 부분은 ‘평난(平難)’이라는 내용을 넣어 평난원종공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묵등(墨等)으로 해놓아 좀 더 구별하기 쉽게 표시하였다.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의 나열은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기준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나열하였고, 1등공신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3등공신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함 기술 부분은 「광국원종공신녹권」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 등을 함께 기재하여 비교적 자세한 직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평난원종공신녹권」의 직함 기술은 그리 자세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광국원종공신녹권」에서 봉사(奉事)의 직함을 나타낼 때에는 소속 기관인 사역원(司譯院)을 붙여 ‘司譯院奉事 ○○○’라고 기재했으나 「평난원종공신녹권」에서는 그저 ‘奉事 ○○○’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職銜 記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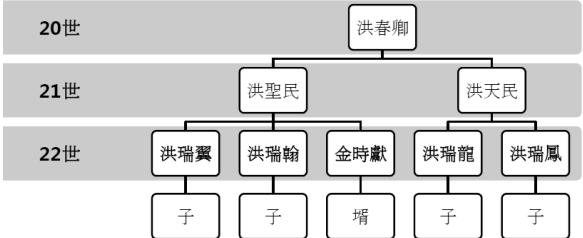
녹권 발췌 부분	司譯院 所屬	녹권 발췌 부분	직함 기술 부분	
	司譯院判官	申應澍	別坐	尹百順
	司譯院副正	朴麟禧	別提	辛宗遠
	司譯院直長	洪明彦	縣監	朴知述
	司譯院奉事	韓潤傑	奉事	尹齊賢
	司譯院前銜	金吉孫	參奉	權得中
	司譯院前銜	趙安義	別提	韓師儉
				

「광국원종공신녹권」

「평난원종공신녹권」

또한 성명의 경우는 같은 성(姓)씨에 항렬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곳곳에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3등원종공신을 기재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양(南陽) 홍씨(洪氏)의 경우 같은 등급인 3등의 한 부분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남양홍씨족보』를 찾아보니 녹권에 기재된 홍서익·홍서한·김시현·홍서룡·홍서봉은 남양 홍씨 22세의 인물들로 앞의 3명은 홍성민(洪聖民)의 아들과 사위이며 뒤의 2명은 홍성민의 아우인 홍천민(洪天民)의 아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특별한 규칙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으나 대체로 같은 집안사람끼리 나란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녹권의 부분은 <표 7>과 같다.

<표 7> 同姓의 가족 관계의 사례

녹권 발췌 부분	南陽 洪氏 家系圖 ¹¹⁾
	

선조는 원종공신의 책봉을 명했던 날인 동왕 24년(1591) 3월 21일에 원종공신

11) 洪鍵英 編, 『南陽洪氏族譜』(新義州: 洪鍵英, 1937).

의 처우에 대해 ‘동부승지 기령’에게 전지하였다.¹²⁾ 이로 인해 각 등급별로 포상규정 및 특전을 정해 이조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해졌다. 『평난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이전에 반사되었던 『광국원종공신녹권』의 것과 차이가 없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佐理·光國·平難原從功臣에 대한 褒賞規程 및 特典 내용 비교

區分		褒賞規程		
		佐理	光國	平難
一等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封爵	封爵	封爵
二等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甥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甥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無子孫者兄弟甥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부모	-	-	-
三等	본인	各加一資	各加一資	各加一資
	자손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子孫承蔭宥及後世
	부모	-	-	-
各等 通訓 以上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子孫兄弟甥姪女婿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物故人		各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各依本等施行爲跡各追贈一資
犯罪作散人		並於本品叙用	並於本品叙用	並於本品叙用
在喪及 無故作散人		各加一資叙用	各加一資叙用	各加一資叙用
永不叙用人		許通仕路	許通仕路	許通仕路
職牒收取人		並只還給	並只還給	並只還給
妾子		限品安徐	限品安徐	限品安徐
公私賤口		免賤	免賤	免賤
係干逆黨及因 亦賊公事間 事被罪者 ¹³⁾		-	官爵一隸舉行安徐	官爵一隸舉行安徐

*굵은 글씨는 각 녹권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과 다른 부분을 나타냄.

12) 平難功臣都監 編, 『平難原從功臣錄券』 <卷首>.

13) 역당(逆黨)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公事) 간의 일로 인해 죄를 받은 자.

<표 8>에서 확인한 결과, 평난원종공신에게 내린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은 같은 해에 책봉된 광국원종공신의 것과 같다. 1등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子孫)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後世)에까지 미치며, 부모(父母)를 봉작(封爵)하게 했다. 2등(原從功臣二等)은 각각 1자급(資級)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며, 아울러 자손 중에서 자원(自願)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며, 그 자손이 없는 자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原從功臣三等)은 각각 1자급을 더하여 자손이 음직(蔭職)을 이어받게 하고, 유사(宥赦)가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각 등급에서 통훈 대부(通訓大夫) 이상인 경우에는 자손·형제·조카·사위 중에서 1인이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을 더하고,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각각 본래의 등급에 의하여 시행하되, 각각 1자급을 추증(追贈)한다. 범죄(犯罪)하여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아울러 본품(本品)에 서용(叙用)하며, 상(喪)중에 있거나 까닭 없이 산인(散人)이 된 경우에는 각각 1자급을 더하여서 서용한다. 길(路)이 서용하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에는 벼슬길(仕路)에 허통(許通)하게 하며, 직첩(職牒)을 거두어들인 사람인 경우에는 모두 되돌려 주고, 첩(妾)의 아들인 경우에는 한품(限品)하지 아니하며, 공천(公賤)·사천(私賤)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였다. 또한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하였다.

성종조에 책봉된 좌리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표 8>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다. 이전에 반사된 녹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항목인 ‘係干逆黨及因亦賊公事間事被罪者 官爵一隸舉行安徐’는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간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평난원종공신의 포상규정 및 특전의 내용이 좌리원종공신의 것과 다른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전보다는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성격이 추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3.3.3 卷末

권말의 첫 행에는 녹권을 발급·반사를 주관했던 기관이 기재되었는데 바로 평난공신도감(平難功臣都監)이다. 공신도감은 공신 책록을 위해 그 업적 등을 조사하던 임시 설치된 관서이다. 이 기관이 설치되면 의정부·삼사(三司)와 함께 봉군(封君) 대상자 훈공(勳功)을 심사하여 등급을 1·2·3등으로 나눠 훈호를 내렸다. 그 다음 행부터는 그 기관에서 녹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았던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姓名)이 기재되었다. 이전 연구대상이었던 「좌익원종공신 녹권」과 「좌리원종공신녹권」은 직함과 성씨(姓氏) 및 그들의 수결로 구성되었으나 「평난원종공신녹권」은 「광국원종공신녹권」과 마찬가지로 기관 구성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어 그에 따른 수결은 없어졌다. 이것을 바탕으로 「평난원종공신 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구성원들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담당 官員의 官職·職銜

No.	姓名	官職·職銜	備考	品階
1	朴忠侃	堂上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正憲大夫工曹判書兼五衛都總府都總管商山君	정공신 1등	정2품
2	李軸	堂上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知中樞府事完山君	정공신 1등	정2품
3	韓應寅	堂上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嘉善大夫行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清平君	정공신 1등	정3품
4	閔仁伯	堂上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	정공신 2등	정3품
5	趙瑗	郎廳通訓大夫軍器寺正知製敎	-	정3품
6	張雲翼	郎廳通訓大夫行成均館司成知製敎兼承文院參校漢學敎授	-	종6품
7	金公輝	監校郎廳義禁府經歷朝散大夫	-	종4품

「평난원종공신녹권」의 권말에는 녹권의 발급을 담당한 관원들의 관직 및 직함, 성명 등이 기재되었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평난원종공신녹권」의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은 모두 7명이다. 도총관 1명, 지중추부사 1명, 도승지 1명, 판결사

1명, 지제교 1명, 한학교수 1명, 조산대부 1명 등 7개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의 품계는 정2품부터 종6품까지 다양한 품계의 관원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이들의 구체적인 관직·직함·성명을 분석하니 평난원종공신에 대한 책봉 및 녹권 발급을 담당했던 관원들 7명 중 4명이 이미 평난 정공신으로 책봉된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난 정공신이 책봉된 이후, 다시 공신도감이 구성되어 평난 원종공신을 책봉하고 녹권을 발급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은 평난공신도감에는 4명은 당상(堂上)¹⁴⁾으로, 2명은 낭청(郎廳)¹⁵⁾이며 1명은 감교낭청(監校郎廳)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평난원종공신을 책록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였다.

본문까지와는 달리 권말 부분에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문까지는 활자, 즉 재주갑인자로 인쇄하였지만 권말 부분은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였다. 이처럼 권말 부분을 목판으로 인쇄한 까닭은 관원의 직함을 전직, 겸직 및 공신호 등의 모든 내용과 함께 성명을 한 행에 기재하고 있어 그 글자를 작고 정교하게 나타내야 했기 때문이다.

4. 錄券의 內容 分析

이 장에서는 선조가 정여립이 역모를 꾀한 것을 고변하고 체포하며, 이를 조사하는 데 크고 작은 공을 세워 책봉된 평난원종공신을 등급별로 직함과 이를 바탕으로 알아본 신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3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과

14) 당상(堂上)의 관원(官員)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상은 정당에 오를 수 있는 위격을 뜻하며, 조선시대 문무관 18품계 중에서 정3품 상계(上階)이며 종친(宗親)의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의 봉순대부(奉順大夫), 문관(文官)의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武官)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자급(資級) 또는 그 자급의 벼슬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한국고전용어사전 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15) 조선시대 육조에 설치한 각 관아(官衙)의 실무책임자를 맡은 정랑과 좌랑으로 당하관(堂下官)의 총칭이었으며 이를 낭관(郎官)이라고도 하였다(『한국고전용어사전 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성명을 바탕으로 각각의 인원수를 분석하여 평난원종공신들의 특징을 조사한다.

4.1 等級別 分析

4.1.1 平難原從功臣一等

평난원종공신 1등으로 녹권에 기재된 사람은 모두 129명으로 이들의 직함을 모두 헤아려보면 79종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확인된 직함을 근거로 이들을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平難原從功臣 1等の 分包現況

品階	職 銜	人員數	比率(%)
군, 尉	臨海君, 光海君, 信城君, 定遠君, 順和君	5	3.8
정1품	右議政	1	0.8
중1품	行判中樞府事	1	0.8
정2품	府尹, 知中樞府事, 判書, 判尹	6	4.7
중2품	兼司僕, 觀察使, 同知中樞府事, 兵使, 尙膳, 參判, 行大司憲	11	8.5
정3품	府使, 尙茶, 承旨, 前正, 正, 參議, 參知, 判校, 行牧使	17	13.2
중3품	司諫, 司成, 行僉使	3	2.3
정4품	司藝, 舍人, 應教, 掌令, 行護軍	9	6.9
중4품	經歷, 郡守, 副護軍, 前經歷, 前郡守, 行郡守	10	7.8
정5품	別坐, 前別坐, 正郎, 獻納	7	5.4
중5품	都事, 前都事, 前判官, 判官	10	7.8
정6품	監察, 別提, 司果, 司謁, 前監察, 正言, 佐郎	9	7.0
중6품	守門將, 引儀, 前主簿, 前縣監, 主簿, 行縣監, 縣監	13	10.1
정7품	司正, 注書	2	1.6
중7품	前直長, 直長	6	4.7
정8품	-	0	0
중8품	奉事	3	2.3
정9품	-	0	0
중9품	將仕郎, 前假監役, 參奉	5	3.8
기타	校生, 及第, 幼學, 進士, 忠義衛, 行都守, 甲士, 私奴	11	8.5
合 計		129	100

<표 10>을 보면 1등공신에 책봉된 품계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품계는 17명에 해당하는 정3품으로 전체의 약 13.2%가 이 품계에 속해있다. 그 다음은 종6품이 13명인 10.1%를 구성하고 있다. 그 뒤로 종2품 11명의 공신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4품과 종5품에 해당하는 공신이 각각 10명에 해당하는 7.8%를 구성하였다. 즉 정3품, 종6품, 종2품과 종4품 및 종5품에 해당하는 공신들이 1등공신의 절반 정도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난원종공신 1등에는 모두 79종의 직함에 129명의 공신이 기재되었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1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經歷	종4품	문관	5	3.9
	直長	종7품	문관	5	3.9
3	別坐	정5품	문관	4	3.1
	幼學	·	문관	4	3.1
	前都事	종5품	문관	4	3.1
	主簿	종6품	문관	4	3.1
	行護軍	정4품	무관	4	3.1
	合 計			30	20.2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인원을 기재한 직함은 경력(經歷)과 직장(直長)으로 각각 5명이었고, 별좌(別坐)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전도사(前都事), 주부(主簿) 및 오위(五衛)의 벼슬 중 하나인 행호군(行護軍)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 각각 4명이었다. 비교적 적은 비율에 속하지만 1등공신 중 약 20%가 위의 직함을 가진 공신들이었다. 1등공신들의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平難原從功臣 1등의 文·武班 現況

區 分	人 員 數	比 率 (%)
문 관	104	80.6
무 관	13	10.1
종친 및 인척, 군	5	3.9
내시부(內侍府)	5	3.9
기 타	2	1.5
합 계	129	100

<표 12>와 같이 총 129명의 1등공신 중에 문관이 104명으로 80.6%였고 무관이 13명으로 10.1%로, 문관이 무관보다 더 많아 그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종친 및 인척이나 군(君)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명인 3.9%로 같은 시기에 책봉된 광국(光國)원종공신의 1등공신 가운데 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10.2%인 것과 비교해보면 그 수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신의 책봉 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더 연구해볼 내용이다.

4.1.2 平難原從功臣二等

평난원종공신 2등에 책봉된 공신은 모두 144명이었으며 공신들의 직함은 68종으로 구성되었다. 직함을 기준으로 이를 품계별로 분류하여 분포된 현상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平難原從功臣 2등의 分包現況

品階	職 銜	人 員 數	比 率 (%)
군	-	0	0
정1품	府院君	1	0.7
종1품	-	0	0
정2품	行知中樞府事	1	0.7
종2품	同知中樞府事, 前觀察使, 參判	4	2.8
정3품	牧使, 宣傳官, 禦侮將軍, 羽林衛, 留守, 前承旨, 正, 參議, 僉知中樞府事, 行牧使	17	11.8

「平難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品階	職 銜		人員數	比率(%)
종3품	司成, 別侍衛		2	1.4
정4품	司藝, 行護軍		3	2.1
종4품	經歷, 萬戶, 行郡守		3	2.1
정5품	前正郎, 正郎, 校理, 持平, 別坐		6	4.2
종5품	都事, 前都事		3	2.1
정6품	佐郎, 司果, 別提, 假司諫, 前監察		9	6.2
종6품	副修撰, 捕盜部將, 縣監		8	5.5
정7품	正字, 注書		2	1.4
종7품	直長		1	0.7
정8품	-		0	0
종8품	奉事, 啓功郎		3	2.1
정9품	檢閱, 司勇		4	2.8
종9품	學諭		1	0.7
기타	甲士	3	76	52.7
	館軍	1		
	校生	5		
	教授	1		
	記官	19		
	內奴	4		
	步兵	2		
	保人	10		
	府奴	1		
	私奴	2		
	書吏	2		
	書員	2		
	書者	1		
	水軍	3		
	良人	1		
	營吏	4		
	幼學	4		
	前都守	1		
	正兵	4		
	進士	1		
	忠義衛	2		
	捕盜聽書員	1		
	品官	2		
合計			144	100

<표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품계가 없는 기타에 해당하는 2등공신이 144명 중 7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를 제외하면 평난원종공신 2등으로 책봉된 144명 중 17명으로 정3품이 11.8%를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9명으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정6품이 많았으며, 종6품은 이보다는 적은 8명으로 5.5%를 이루었다. 1등공신과 비교해보면 그 품계가 하위인 사람들이 2등공신으로 책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많은 점으로 보아 낮은 직함의 사람들도 공이 있으면 차별이 없이 공신으로 책봉한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평난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68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함을 기준으로 비교적 인원수가 많이 기재된 순으로 분석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2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記官	없음	문관	19	13.2
2	保人	없음	무관	10	6.9
3	校生	없음	문관	5	3.5
	宣傳官	정3품	무관	5	3.5
	佐郎	정6품	문관	5	3.5
合 計				44	30.6

<표 14>에서 보듯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함은 지방의 하급 관리인 기관(記官)¹⁶⁾이었고, 그 다음은 군사비 충당을 위해 정군(正軍)의 경제적

16) 기관이라는 직함은 이전에 연구했던 녹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직함이다. 이 직함은 지방관 부(地方官府)의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방(工房)의 육방(六房)을 담당하는 육방향리층(六房鄉吏層)이다. 고려시대에는 이들을 기관(記官)이라 하였으며 병정(兵正)·창정(倉正)·호정(戶正)·공수정(公須正)·창록정(倉祿正)·부호정(副戶正)·객사정(客舍正)·약점정(藥店正)·사옥정(司獄正)·부병정(副兵正)·부창정(副倉正)·부공수정(副公須正)·부창록정(副倉祿正)·부객사정(副客舍正)·부약점정(副藥店正)·부사옥정(副司獄正) 등의 직(職)을 담당하였고 주현군(州縣軍)의 교위(校尉)[정(正)이 담당]·대정(隊正)[부정(副正)이 담당]을 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방지배자로서의 기관(記官)이 조선초기에 이르면 관품(官品)·녹봉(祿俸)·과전(科田)도 받지 못하고 녹삼(綠衫)에 평정건(平頂巾)을 쓰는 행정실무자로 그 지위가 하락하였다(이성무, “조선초기

인 보조를 했던 보인(保人)이 10명으로 많았다. 각 고을의 향교에 등록된 유생인 교생(校生)과 형명(形名)·계라(啓螺)·시위(侍衛)·전명(傳命) 및 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았던 관직인 선전관(宣傳官) 및 육조(六曹)의 정육품 관직인 좌랑(佐郎)의 직함을 가진 공신이 각각 5명이다. 특히 <표 13>을 보면 2등공신에는 품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함을 지닌 공신이 2등공신 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많은 비율이 차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 『평난원종공신록권』의 반사사유인 정여립의 역모사건 당시 정여립을 체포하거나 이에 대해 조사를 한 역할을 하는 등 지방의 하급관리나 군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신으로 많이 책봉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당시 수직계층 사회였던 조선시대에서 직함에 있어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정여립 역모의 난을 평정한 공이 있으면 모두 공신으로 책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다음으로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平難原從功臣 2등의 文·武班 현황

區 分	人 員 數	比 率 (%)
문 관	89	61.8
무 관	42	29.2
종친 및 인척, 군	-	0
기 타	13	9.0
합 계	144	100

평난원종공신 2등 144명 중에 문반에 해당되는 공신은 89명으로 2등원종공신 중 대다수가 이에 해당되며, 무관은 42명으로 약 29.2%를 차지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인원수가 차지했다. 정여립의 난을 군사적으로 평정하는 데에 힘쓴 공신들일 것으로 보인다. 종친 및 인척, 군(君)에 해당되는 공신이 1등에서는 있었으나 2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들은 노비에 해당하는 직함을 갖고 있거나 양인(良人), 갑사(甲士) 등이다.

(朝鮮初期)의 향리(鄉吏),”『한국사연구』 제5호(1970), 95).

4.1.3 平難原從功臣三等

평난원종공신 3등에 책봉된 공신들은 모두 412명으로, 이들의 직함 및 관직의 구성은 97종이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직함 및 관직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권에 기재된 직함을 기준으로 이들을 품계별로 구분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平難原從功臣 3等の 분포현황

品階	職 銜		人員數	比率(%)
군	文城君		1	0.2
정1품	-		0	0
종1품	判事		1	0.2
정2품	-		0	0
종2품	內禁衛		1	0.2
정3품	內醫, 宣傳官, 定虜衛		8	1.9
종3품	-		0	0
정4품	-		0	0
종4품	經力, 郡守, 宣略將軍, 僉正		4	1.0
정5품	司直, 正郎, 忠毅校尉		3	0.7
종5품	德新令, 都事, 判官, 縣令, 顯信校尉		5	1.3
정6품	司果, 司鎗, 承議郎, 承訓郎, 前監察, 前佐郎, 佐郎		11	2.7
종6품	秉節校尉, 副司果, 部將, 宣敎郎, 宣務郎, 善書, 守門將, 勳節校尉, 前部將, 縣監		38	9.2
정7품	務功郎		2	0.5
종7품	別監, 副司正, 前明律, 直長		26	6.3
정8품	-		0	0
종8품	奉事, 承仕郎, 前審律		8	1.9
정9품	司勇, 前訓導, 從仕郎, 效力副尉		11	2.7
종9품	監役, 檢律, 副司勇, 將仕郎, 展力副尉, 參奉, 訓導		15	3.6
기타	假吏	3	278	67.6
	甲士	6		
	館軍	2		
	官奴	5		
	校生	7		
	及第	2		

「平難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品階	職 銜		人員數	比率(%)
기타	記官	13	278	67.6
	內奴	2		
	錄事	4		
	步兵	1		
	保人	31		
	寺奴	2		
	私奴	8		
	生徒	1		
	生員	7		
	書吏	34		
	書房色	1		
	書寫	1		
	書員	2		
	書者	1		
	水軍	2		
	冶匠	4		
	良人	4		
	驛子	1		
	營奴	1		
	營吏	1		
	幼學	52		
	律生	2		
	醫生	2		
	醫員	11		
	前敎官	1		
	前銜	1		
	正兵	8		
	鎮撫	1		
	進士	6		
	唱准	3		
	忠順衛	2		
	忠義衛	7		
	品官	2		
	學生	3		
	閑良	3		
	閑丁	1		
合計			412	100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3등원종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의 직함은 모두 96종이었으며, 가장 많은 공신들이 포함된 품계는 기타¹⁷⁾가 278명으로 67.6%로 대부분의 3등원종공신이 이에 해당했다. 그 다음으로는 종6품이 38명으로 9.2%였으며 종7품의 공신이 26명으로 약 6.3%를 이루었다. 이들을 1등 및 2등원종공신의 품계 분포현황을 비교해볼 때, 대체적으로 품계가 낮은 직함의 공신들로 이루어졌으며 군(君) 등의 왕의 친족이나 인척인 공신은 3등에 단 1명만이 책봉된 사실을 알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평난원종공신은 등급이 높을수록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품계가 대체적으로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등급이 낮아질수록 품계가 낮은 직함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12명의 3등원종공신은 96종의 직함에 따라 인원수가 각각 달랐는데, 이들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만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3등원종공신 중 인원수가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직함

순위	직함	품계	문/무관	인원수	비율(%)
1	幼學	·	문관	52	12.6
2	書吏	·	문관	34	8.3
3	保人	·	무관	31	7.5
4	學生	·	문관	30	7.3
5	別監	종7품	문관	21	5.1
합 계				168	40.8

3등원종공신 중에 <표 17>에서 보듯이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儒生)인 유학(幼學)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시대의 하급 품외(品外) 관원을 의미하는 서리가 34명으로 약 8.3%를 차지하였다. 정군을 경제적으로 돕던 보인(保人)이 2등원종공신에서도 많은 비율로 구성되었는데 3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사학(四學)·향교의 생도인 학생(學生)이 31명이 있었으며, 그 다

17) 진사 등 관직에 아직 나아가지 못했거나 신분이 낮아 품계를 갖지 않은 직함들을 말한다.

음으로 약 5.1%의 공신이 종7품의 별감(別監)이었다. 이들 직함에 따른 문·무반(文·武班)을 분석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平難原從功臣 3등의 文·武班 현황

區 分	人員數	比率(%)
문 관	256	62.1
무 관	114	27.7
종친 및 인척, 군	1	0.2
기 타	41	10.0
합 계	412	100

평난원종공신 3등의 문·무반 현황도 1등·2등과 비슷하게 문관이 무관의 직함을 지닌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그 비율을 비교하면 1등과는 달리 2등·3등에서의 무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에 해당 하는 공신들, 즉 노비[奴] 혹은 양인(良人)인 공신들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등·3등원종공신은 실질적으로 정여립의 난을 평정하는데 힘쓴 군사나 하급관리들이 다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4.2 身分別 分析

조선 초기의 신분계층은 대체로 양반(兩班)·중인(中人)·양인(良人)·천인(賤人)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양인·천인 두 개의 신분계층,¹⁸⁾ 양반·평민(平民)·천민(賤民) 세 개의 신분계층, 양반·중인·양인·천인 네 개의 신분계층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견해가 있는 것은 각 계층의 개념과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특히 조선 초기에는 그 신분제도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일반적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18) 韓永愚 著, 『朝鮮時代 身分史研究』(서울: 집문당, 1997), 14-15.

네 개¹⁹⁾로 구분하여 각 신분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4.2.1 兩班

양반은 문·무관직(文·武官職)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백성들을 지배하였던 신분계층으로, 각 등급별 양반의 인원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감찰(監察) 등 49개의 직함²⁰⁾은 각 1명,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 14종의 직함²¹⁾은 각 2명, 행목사(行牧使) 등 5종의 직함²²⁾은 각 3명이었다. 주부(主簿) 등 5종의 직함²³⁾은 각 4명으로 파악되며, 경력(經歷) 등 2종의 직함²⁴⁾은 각 5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한다. 즉 75종의 직함을 가진 122명의 1등공신이 양반이었음이 확인되었다.

2등에서는 정(正) 등 35종의 직함²⁵⁾은 각 1명, 검열(檢閱) 등 9종의 직함²⁶⁾은

19) 위의 네 개의 신분계층 이외에도 신랑역친(身良役賤)이라는 양·천중간(良·賤中間) 신분 계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국가의 공민(公民)인 양인 계층을 확대시키려는 정책의 하나로, 양인 계층으로 볼 수 있다(李成茂, “朝鮮初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

2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찰(監察)·관찰사(觀察使)·광해군(光海君)·교생(校生)·군수(郡守)·급제(及第)·병사(兵使)·부윤(府尹)·부호군(副護軍)·사간(司諫)·사과(司果)·사성(司成)·사예(司藝)·사정(司正)·수문장(守門將)·순화군(順和君)·신성군(信城君)·우의정(右議政)·응교(應敎)·임해군(臨海君)·장령(掌令)·장사랑(將仕郎)·전가감역(前假監役)·전감찰(前監察)·전경력(前經歷)·전군수(前郡守)·전별좌(前別坐)·전정(前正)·전주부(前主簿)·전직장(前直長)·전현감(前縣監)·정랑(正郎)·정언(正言)·정원군(定遠君)·좌랑(佐郎)·주서(注書)·진사(進士)·참지(參知)·참판(參判)·충의위(忠義衛)·판교(判校)·판윤(判尹)·행군수(行郡守)·행대사헌(行大司憲)·행도수(行都守)·행첨사(行僉使)·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행현감(行縣監)·헌납(獻納) 등 49종이다.

2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판관(判官)·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부사(府使)·별제(別提)·사알(司謁)·도사(都事)·사인(舍人)·참의(參議)·인의(引儀)·판서(判書)·전판관(前判官)·정(正)·겸사복(兼司僕) 등 14종이다.

2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행목사(行牧使)·참봉(參奉)·봉사(奉事)·승지(承旨)·현감(縣監) 등 5종이다.

2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주부(主簿)·전도사(前都事)·행호군(行護軍)·별좌(別坐)·유학(幼學) 등 5종이다.

2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경력(經歷)·직장(直長) 등 2종이다.

각 2명이었고 현감(縣監) 등 1종의 직함은 3명이었다. 우림위(羽林衛) 등 3종의 직함²⁷⁾은 각 4명, 교생(校生) 등 3종의 직함²⁸⁾은 각 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등공신 가운데 양반은 51종 직함에 83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3등에서는 감역(監役) 등 38종의 직함²⁹⁾은 각 1명, 급제(及第) 등 9종의 직함³⁰⁾은 각 2명, 병절교위(秉節校尉) 등 4종의 직함³¹⁾은 각 3명이었다. 사약(司鑰) 등 2종의 직함³²⁾은 각 4명, 봉사(奉事) 등 2종의 직함³³⁾은 각 5명이었고 진사(進士) 등 1종의 직함은 6명, 생원(生員) 등 3종의 직함³⁴⁾은 각 7명으로 이루어졌다. 사용(司勇) 등 1종의 직함은 8명, 부사과(副司果) 등 1종의 직함은 9명, 부장(部

- 25)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정(正)·전관찰사(前觀察使)·전도수(前都守)·행호군(行護軍)·전승지(前承旨)·부수찬(副修撰)·전정랑(前正郎)·사과(司果)·정랑(正郎)·사성(司成)·별제(別提)·도사(都事)·정자(正字)·만호(萬戶)·주서(注書)·어모장군(禦侮將軍)·지평(持平)·유수(留守)·직장(直長)·교수(教授)·진사(進士)·경력(經歷)·참의(參議)·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별시위(別侍衛)·별좌(別坐)·부원군(府院君)·학유(學諭)·목사(牧使)·행군수(行郡守)·계공랑(啓功郎)·행목사(行牧使)·전감찰(前監察)·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등 35종이다.
- 26)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검열(檢閱)·교리(校理)·봉사(奉事)·사예(司藝)·사용(司勇)·전도사(前都事)·참판(參判)·충의위(忠義衛)·품관(品官) 등 9종이다.
- 27)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우림위(羽林衛)·유학(幼學)·포도부장(捕盜部將) 등 3종이다.
- 28)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교생(校生)·선전관(宣傳官)·좌랑(佐郎) 등 3종이다.
- 29)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감역(監役)·경력(經歷)·군수(郡守)·내금위(內禁衛)·덕신령(德信令)·도사(都事)·문성군(文城君)·부사정(副司正)·사과(司果)·사직(司直)·생도(生徒)·선교랑(宣敎郎)·선략장군(宣略將軍)·선무랑(宣務郎)·수문장(守門將)·승의랑(承義郎)·전감찰(前監察)·전교관(前敎官)·전명률(前名律)·전부장(前部將)·전심률(前審律)·전좌랑(前佐郎)·전함(前銜)·전훈도(前訓導)·정랑(正郎)·정로위(定虜衛)·종사랑(從仕郎)·좌랑(佐郎)·진무(鎭撫)·점정(僉正)·충의교위(忠毅校尉)·판관(判官)·판사(判事)·현감(縣監)·현령(縣令)·현신교위(顯信校尉)·훈도(訓導)·효력부위(效力副尉) 등 38종이다.
- 30)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급제(及第)·무공랑(武功郎)·부사용(副司勇)·승사랑(承仕郎)·승훈랑(承訓郎)·여절교위(勵節校尉)·전력부위(展力副尉)·충순위(忠順衛)·품관(品官) 등 9종이다.
- 31)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병절교위(秉節校尉)·선전관(宣傳官)·장사랑(將仕郎)·직장(直長) 등 4종이다.
- 32)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사약(司鑰)·내의(內醫) 등 2종이다.
- 33)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봉사(奉事)·참봉(參奉) 등 2종이다.
- 34) 이에 해당하는 직함은 생원(生員)·교생(校生)·충의위(忠義衛) 등 3종이다.

將) 등 1종의 직함은 18명, 별감(別監) 등 1종의 직함은 21명이었고 학생(學生) 등 1종의 직함은 30명, 유학(幼學) 등 1종의 직함은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3등공신 중 양반은 251명이었고 65종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평난원중공신 685명 중 456명인 약 66.6%가 양반의 신분으로 확인되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니 1등은 75종 직함에 122명으로 1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약 94.6%로 대부분이 양반계층이었으며 경력과 직장의 직함에 해당하는 공신이 각 5명으로 많았다. 2등은 51종 직함에 83명으로 2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94.1%에 해당하며 교생, 선전관과 좌랑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공신들이 각 5명으로 많은 수에 해당하였다. 3등은 65종 직함에 251명으로 3등공신의 전체 인원수 중 60.9%이며 유학 52명, 학생 30명, 별감 21명 순으로 구성되었다.

4.2.2 中人

중인은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으로 양반을 도와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임하였다. 중인을 각 등급별로 그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내시부(內侍府)³⁵⁾의 상선(尙膳) 직함이 2명, 임금 등의 시중을 들며, 특히 다과(茶菓)를 준비하는 일을 관장했던 상다(尙茶) 직함이 3명이었다.

2등에는 서기(書記) 등의 임무를 했던 서자(書者) 등 3종 직함³⁶⁾이 각 1명, 경아전(京衙前)의 하급관리인 서리(書吏) 등 3종의 직함³⁷⁾이 각 2명,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 딸린 아전인 영리(營吏)가 4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관청의 이속(吏屬)이었던 기관(記官)이 19명으로 많은 인원수가 이에 속하였다.

3등에는 율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검률(檢律) 등 8종 직함³⁸⁾에 각 1명, 한의술

35) “환관의 신분은 양인이나 양반의 본래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역에 있어서 품계를 받기 때문에 중인으로 대우받는 것이었다.”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53-54).

36) 이에 속하는 직함은 서자(書者)·가사알(假司謫)·포도청서원(捕盜廳書員) 등 3종이다.

37) 이에 속하는 직함은 서리(書吏)·서원(書員)·보병(步兵) 등 3종이다.

38) 이에 속하는 직함은 검률(檢律)·보병(步兵)·서방색(書房色)·서사(書寫)·서자(書者)·선화(善畵)·영리(營吏)·한정(閑丁) 등 8종이다.

(韓醫術)로 병을 고치던 의생(醫生) 등 3종 직함³⁹⁾에 각 2명, 교서관에서 서책을 간행한 창준(唱准) 등 3종의 직함⁴⁰⁾이 각 3명, 녹사(綠事) 직함이 4명, 의원(醫員) 직함이 11명, 기관(記官)이 13명, 서리(書吏)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중인은 평난원종공신 685명 중 약 17.8%인 122명이었고, 등급별 인원수를 확인해 보니 1등에서는 5명이 있었고, 2등에서는 2등공신 중 약 22.2%인 32명에 해당한다. 3등에서는 3등공신 412명 중 20.6%에 해당하는 85명이 중인 신분이었다.

4.2.3 良人

양인은 양반과 천인의 중간 신분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하며, 각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서는 오위(五衛)의 중위(中尉)에 속했던 군인인 갑사(甲士) 직함이 1명이 있었다. 2등에서는 양인(良人)과 관군(館軍)의 직함이 각 1명, 갑사와 수군(水軍)이 각 3명, 육군의 중심 병력이었던 정병(正兵)이 4명, 군사비 충당을 위해 정군(正軍)에 딸린 경제적 보조자인 보인(保人)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3등에서는 양인과 역자(驛子)의 직함에 각 1명, 관군과 수군의 직함에 각 2명, 양인 직함에 3명, 야장(冶匠)이 4명, 갑사는 6명, 정병이 8명 그리고 보인이 31명으로 가장 많은 수이다. 이상과 같이 평난원종공신 685명 양인 신분에 속하는 1등공신은 1명, 2등공신은 22명, 3등공신은 58명으로 전체 81명이며, 약 11.8%에 해당하는 인원이 양인 계층이었다.

4.2.4 賤人

천인은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하던 계층으로 당시 천역(賤役)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 이들의 각

39) 에이 속하는 직함은 의생(醫生)·서원(書員)·율생(律生) 등 3종이다.

40) 이에 속하는 직함은 창준(唱准)·가리(假吏)·한량(閑良) 등 3종이다.

등급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등에는 사노(私奴)로 1명이 있었고, 2등에서는 부노(府奴) 1명과 사노가 2명, 내노(內奴)가 4명으로 모두 7명이 있었다. 3등에서는 영노(營奴)의 직함에 1명, 내노와 사노(寺奴)의 직함에 각 2명, 관노(官奴)가 5명, 사노가 8명으로 모두 18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난원종공신 685명 중 천인 신분의 1등공신 1명과 2등공신 7명 및 3등공신 18명으로 약 3.8%에 해당하는 26명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양반·중인·양인·천인 등의 4종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 각 등급별 인원수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平難原從功臣 중 身分別 分析

區 分		人員數		比 率
兩班	1等	122	456	66.6
	2等	83		
	3等	251		
中人	1等	5	122	17.8
	2等	32		
	3等	85		
良人	1等	1	81	11.8
	2等	22		
	3等	58		
賤人	1等	1	26	3.8
	2等	7		
	3等	18		
合 計			685	100

<표 19>와 같이 『평난원종공신록권』에 기재된 직함을 4종의 신분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분석한 결과, 양반이 456명, 중인이 122명, 양인 81명, 천인 26명 순으로 양반의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약 6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

이 확인되었다. 이를 다시 각 등급별로 신분을 구분하여 그 인원수를 분석해본 결과, <표 20>과 같다.

<표 20> 等級別 身分 分析

區分	1等	2等	3等	合計	比率 (%)	區分	1等	2等	3等	合計	比率 (%)
兩班	132	128	488	748	85.8	兩班	122	83	251	456	66.6
中人	3	8	92	103	11.8	中人	5	32	85	122	17.8
良人	2	0	11	13	1.5	良人	1	22	58	81	11.8
賤人	0	0	8	8	0.9	賤人	1	7	18	26	3.8
合計	137	136	599	872	100	合計	129	144	412	685	100

「광국원종공신녹권」

「평난원종공신녹권」

<표 20>과 같이 1등공신 129명 중 양반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인 5명, 양인 1명, 천인 1명이 있었다. 1등공신은 대부분 양반의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중인, 양인, 천인의 신분으로도 책봉되었다는 사실이 눈여겨볼 만하다. 2등공신 144명 가운데 양반은 83명, 중인 32명, 양인 22명과 천인 7명 순이었다. 3등공신 412명 중 양반은 251명이었고 중인 85명, 양인 58명, 천인은 1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로 보아 양반 신분이 가장 많았으나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통해 신분의 제약 없이 평난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책봉되었던 광국원종공신의 신분에 비해 비교적 신분이 낮은 중인, 양인, 천인의 책봉 비율이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해에 책봉되었던 「광국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신분 분석과 비교해보면 평난원종공신의 양반 비율은 줄었으나 그 밖의 중인, 양인, 천인의 비율은 늘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공신 책봉 사유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광국원종공신녹권」의 경우는 조선 왕실의 종계변무(宗系辨誣)로서 양반들, 즉 고위 관료들이 이에 힘썼기 때문에 광국원종공신의 대부분은 양반에 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평난원종공신녹권」의 경우는 정여립의 난을 평정한 공신들이 기재되었으며, 여기에는 양반은 물론 난을 진압하기 위해 병사 등 신분이 낮은 자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표 20>과 같이 두 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신분 비율이 차이가 난 것이다.

5. 結 論

이 연구는 선조 24년(1591) 정여립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 공헌한 평난원종공신에게 반사된 『평난원종공신녹권』을 대상으로 문헌상의 기록과 현존하는 실물 자료를 조사하여 녹권의 발급사유를 비롯하여 형태·체제·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난원종공신녹권』은 선조가 1591년 역모를 꾀한 정여립의 난을 평정하는 데 힘써 공을 세운 신하들 685명(1등 129명, 2등 144명, 3등 412명)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한 후 그들에게 반사한 공신 증명서이다.

둘째, 『평난원종공신녹권』은 현재 2곳의 소장처에 2책이 전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1등 신경희(申景禧)와 3등 유봉서(劉鳳瑞)로 신씨문중(신응현)과 국립도서관에 각각 수장되어 있다. 녹권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셋째, 『평난원종공신녹권』은 같은 해인 선조 24년(1591) 종계변무에 힘쓴 광국원종공신에게 발급된 『광국원종공신녹권』과 같이 재주갑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 1책으로 평난공신도감에서 발급하였다. 국립본의 서지적 특징은 사주쌍변, 상하내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전에 반사된 녹권들과는 다른 형태이다. ‘施命之寶’의 인장이 권수제면, 포상 규정 및 특전, 광국공신도감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부분의 3곳에 주인(朱印)되었다.

넷째, 『평난원종공신녹권』의 체제는 다른 녹권의 형식과 동일한데, 크게 권수·본문·권말의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수는 녹권의 발급기관과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은 봉명일·봉명자, 반사사유, 등급별 공신의 직함 및 성명, 포상 규정 및 특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권말은 녹권 발급에 관여한 관원들의 직함과 성명 등을 담고 있다.

다섯째, 평난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은 모두 685명으로 3등급으로 구분되어 「평난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되었다. 이들의 직함을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79종의 직함에 모두 129명이며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은 17명, 종6품에 해당하는 13명, 종2품은 11명 순으로 기재되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경력(經歷)과 직장(直長)이 각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 직함별로 많은 인원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2등원종공신은 68종의 직함에 모두 144명이었고 그 품계에 따라 정3품이 17명, 정6품이 9명이었으며 종6품이 8명 순으로 많았다. 직함별 인원수는 품계를 갖지 않는 기관(記官)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인 10명과 교생, 선전관, 좌랑이 각 5명 기재되었다. 3등원종공신은 97종의 직함에 모두 412명이었으며 관직에 나가지 못했거나 품계를 갖지 못한 기타에 해당하는 공신이 278명으로 많은 공신들이 구성되었고 종6품에 해당되는 공신은 38명, 종7품은 26명이었다. 직함별 인원수는 유학이 52명, 품계가 낮은 서리가 34명, 보인 31명의 순으로 많이 차지하였다. 평난원종공신의 직함은 모두 180종이며 유학(幼學)은 60명, 보인(保人)이 41명, 서리(書吏)가 36명이었고 기관(記官)은 32명, 학생(學生)이 30명 순으로 인원수가 많았다. 또한 모든 등급에서 양반을 비롯하여 중인, 양인, 천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재됨으로써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평난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공신들의 직함을 기준으로 그들의 신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1등원종공신은 양반 122명, 중인 5명, 양인 1명, 천인 1명이었고, 2등원종공신은 양반 83명, 중인 32명, 양인 22명, 천인 7명이었다. 3등은 양반 251명, 중인 85명, 양인 58명, 천인 18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각 등급별 신분은 양반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권의 발급 대상자의 내용과 직함을 분석한 결과, 등급이 낮아질수록 직함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신분을 분석한 결과 양반뿐 아니라 중인, 양인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아 천대를 받던 천인에게까지 포상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조선시대 원종공신의 책봉에

관한 사실을 조사 정리함으로써 조선 공신 인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신 녹훈 사실을 토대로 조선시대 신분사 및 인물사 연구에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古典資料

- 『經國大典』.
- 『光國原從功臣錄券』.
- 『國朝人物考』.
- 『朝鮮王朝實錄』.
- 『佐翼原從功臣錄券』.
- 『佐理原從功臣錄券』.
- 『平難原從功臣錄券』.

2. 單行本

- 江陵劉氏大同譜編纂委員會. 『江陵劉氏大同譜』. 서울: 江陵劉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94.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서울: 가람기획, 2002.
- 李成茂. 『朝鮮兩班社會研究』. 서울: 一潮閣, 1995.
- 이흥직 편저. 『국사대사전』. 서울: 학원출판공사, 2000.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 千惠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_____.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

원, 1994.

韓永愚. 『朝鮮時代 身分史研究』. 서울: 집문당, 1997.

洪鍵英 編. 『南陽洪氏族譜』. 新義州: 洪鍵英, 1937.

3. 論文

노기춘. “振武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9輯(2008). 169-200.

林基榮. “壬辰倭亂 直後 賜給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2.

朴文烈. 閔庚錄. “申景禧 平難原從功臣錄券.” 『박물관보』 제16호(2003). 64-100.

朴文烈. “月川君 金吉通 純誠佐理功臣錄券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5-32.

———. “平陵君 申景禧 平難原從功臣錄券에 관한 研究.” 『인문과학논집』 제31집(2005). 183-209.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李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 『東亞文化』 第13輯(1976). 173-191.

장희홍. “朝鮮時代 宦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4.

전중섭.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79.

鄭杜熙. “朝鮮 世祖 - 成宗期の 功臣研究.” 『震壇學報』 51號(1981). 131-181.

秦奈伶. “朝鮮時代に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 “佐理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427-456.

———. “佐翼原從功臣錄券의 書誌的 研究.”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391-415.

崔承熙. “朝鮮後期 原從功臣錄券과 身分制 동요.” 『韓國文化』 第22輯(1998). 113-157.

4. Web

서울대학교 규장각 해제. [2011.5.9] <<http://kyuganggak.snu.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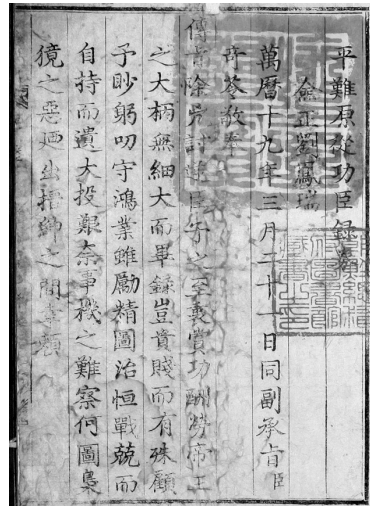
<<http://www.encykorea.com/encyweb.dll?TRX?str=20193&>>.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11.6.25] <<http://people.aks.ac.kr/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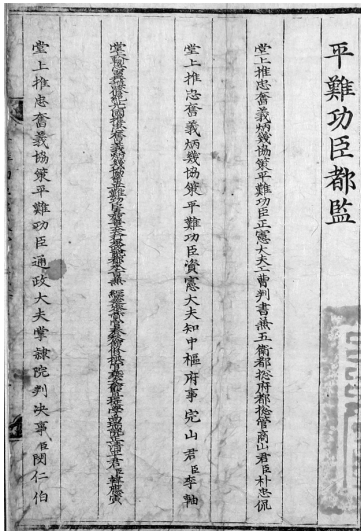
〈附錄〉 平難原從功臣錄券 書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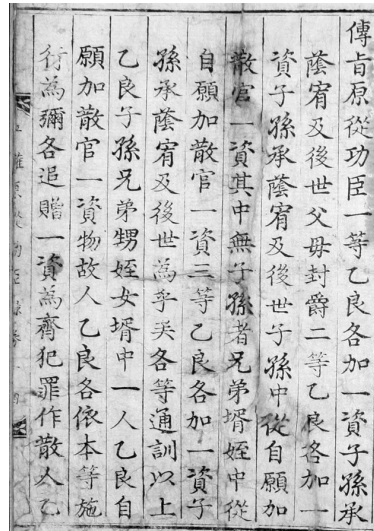
등급이 바뀌는 면



권수제면



복권 간행 담당관원의 직함과 성명의 면



포상규정 및 특전이 시작되는 면

